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
2025. 6. 24(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2694호로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예비비 지출내역

○ 801-01 일반예비비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 산 과 목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 위	세 부	통계목					
합 계				32,050,000	32,000,000	0	50,000	
의약과	보 건 의 료 서 비 스 공 제	비 상 진 료 병 의 원 약 국 지 원	의 료 및 회 복 비	32,050,000	32,000,000		50,000	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추석연휴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

○ 2024회계연도 보건소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3,200만원 지출잔액은 5,000만원임.

3. 검토의견

○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“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”하는 것으로,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

추석연휴 경증환자 의료비로 불가피한 지출이며,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